

먼저 忠清北道 農業系 高等學校 농업기계 공동 실습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(참조)

**忠清北道農業系高等學校 農業機械共同實習所 設置條例案**

1. 제출자 : 忠清北道 教育監

2. 제출일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1년 11월 12일

나. 회부일자 : 1991년 11월 13일

3. 提案事由

농업기계조작 기능 신장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농업기계에 대한 전문성과 效率性을 높이며 선진영농 기술의 보급과 영농현장에서의 적용 능력을 培養 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가. 농업기계공동실습소 설치내용

설치교	위 치	설치년월일	교육과정	교육인원	비 고
청주농업 고등학교	청주시내덕 1동322번지	1992.4.1	기 당 2 주	기 당 30 명	1 년 9기운영예정

나. 조직

실습소에 연수과와 사무과를 두며, 청주농업고등학교 校長, 主任校師, 實課校師, 一般職員을 겸직하도록 함.

다. 입소자격 (교육대상)

- 1) 농업계고등학교 학생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
- 2) 농업계 실과교사 및 기능직 공무원

5. 檢討意見

忠清北道 農業系高等學校 農業機械 공동실습소 設置 條例 제정안을 검토한 바, 농업기계조작 기능 신장 教育을 실시하므로써 農業機械에 대한 專門性 과 效率性을 높이며 先進 영농 기술의 補給과 營農現場에서의 적용 능력을 배양하고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(教育機關의 設置) 제2항 「教育監이 제1항의 教育機關을 당해 시·도 條例로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.」에 의거 教育부장관의 承認을 얻어 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관련 법규 및 근거 :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(별첨)

7. 조례안 : 별첨

다음은 忠清北道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<참조>

忠清北道 圖書館 設置 및 使用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

1. 제출자 : 충청북도 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1년 11월 12일

나. 회부일자 : 1991년 11월 13일